

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-132호

행정처분(과태료)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(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)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3일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(6명)

성명	소재지	처분 내역
이○식	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김○곤	경기도 화성시 동탄청계로 303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이○현	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손○민	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나길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김○찬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2로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이○혁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이하 생략	과태료(교육미이수)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- 처분의 원인사실 : 이수기한 내 교육·훈련 미이수 혐의
- 과태료 250,000원(법정기준 500,000원, 1/2감경)
- 납부기한 :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-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: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(02-2110-6725)
 - ① 은행 또는 우체국,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(giro.or.kr),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
- 근거법령 :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(과태료), 시행령 제121조제1항(과태료의 부과기준)

3. 안내사항

-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~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.
- 또한,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·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-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